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,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구성 관련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조항 개정(안 제2조제3항)

문화재위원의 임기 2년은 그대로 두고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함

나.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시·도문화재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조항 신설
(안 제2조제6항)

문화재위원이 시·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을 명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하고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위원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·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삭 제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고,</u> <u>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④ ·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하되</u> <u>연임할 수 있다.</u>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⑥위원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· <u>도문화재위원회의</u> <u>위원을 겸임</u> <u>할 수 없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817